

식품집단소송제, 식품소비자보호 및 식품산업의 발전

이 종 영 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식품의 안전은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사회에서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정착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올해 초 많은 논란 끝에 증권부문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를 환경분야와 식품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식품산업발전의 핵심은 식품안전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활동은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을 자초하는 철경이 되고 있다.

산업국가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물론 외국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하는 경우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요청이라 할 것이다. 식품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 여론재판을 통하여 경쟁회사의 도산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과 골뱅이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그리고 최근의 만두소 사건에서 해당 사업자는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언론에 해당 사건이 발생 하였다는 보도 자체로 이미 해당 식품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인식할 때에는 이미 해당 식품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거나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점이 식품분야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식품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여론재판을 경쟁사가 제3자를 이용하여 남용할 경우에 집단소송제도는 식품시장의 파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최종적으로 식품소비자에게 귀착하게 된다.

특정된 제품에 대하여 식품집단소송제도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언론의 보도만 있어도 해당 식품회사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식품안전과 집단소송제도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에서 지적된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안는가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특정된 제품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만으로 이미 해당 식품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의 제소에 대한 요건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셋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로 돌아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집단소송은 본래 취지는 소액 다수의 피해구제인데 오히려 소비자 보다 변호사만이 소송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하여 식품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구제금액은 미미하고,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수임료는 과대하게 된다. 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국은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몇 명의 변호사를 위하여 수많은 근로자의 생활터전을 없애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때에 실현된다. 식품사고가 발생한 후에 식품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후처리의 문제로서 전반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는 집단소송제도 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식품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식품분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도는 식품안전을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